



의안번호	제74호
------	------

<p style="text-align: center;">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17. 9. 8.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74호
----------	------

제출연월일 : 2017. 9. 8.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가정용·일반용·육탕용으로 구분된 3분류 수도사용료 체계에 산업용을 신설하여 공장 규제를 완화하고
-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수도사용료 부담을 줄여 산업(농공)단지 내 기업유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업종별 요금 중 산업용을 현실에 맞게 추가(안 별표 1)
- 나. 업종구분표 중 산업용을 현실에 맞게 추가(안 별표 3)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논산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 해당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4) 규제심사 : 해당없음
- (5) 입법예고 및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 2017. 06. 19 . ~ 2017. 07. 09 . (20일간)
 - (나) 결과 : 의견 없음
- (6)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7) 충청남도소관실과 : 물관리정책과 (☎041-635-2733)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고지분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맑은물과장	홍 민 기
	수도행정팀장	유 정 태 (041-746-6351)

[별표 1]

업종별 요금(제29조 관련)

(단위: 원)

업종별	구분	사 용 량(m ³)	m ³ 당 요금	비 고
가 정 용		· 1~20	590원	
		· 21~30	1,060원	
		· 31m ³ 이상	1,530원	
일 반 용		· 1~100	1,350원	육군훈련소는 일반용 1단계 적용
		· 101~300	1,680원	육군훈련소는 2016년 1월 부터 일반용 2단계 적용
		· 301~1000	2,050원	육군훈련소는 2017년 1월부터 일반용 3단계 적용
		· 1001~2000	2,390원	육군훈련소는 2018년 1월부터 일반용 4단계 적용
		· 2001m ³ 이상	2,700원	육군훈련소는 2019년 1월부터 일반용 5단계 적용
육 탕 용		· 1~1000	1,070원	
		· 1001~1500	1,550원	
		· 1501~2000	1,890원	
		· 2001m ³ 이상	2,220원	
산 업 용		· <u>1~100</u>	<u>1,350원</u>	
		· <u>101m³이상</u>	<u>1,680원</u>	

[별표 3]

업종구분표(제30조제1항 관련)

업종별	구분내역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점 및 부동산 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시설 ○ 경로당, 노인회관, 탁아소, 육아시설, 양로원, 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영리 목적의 시설 제외) ○ 공동주택 단지내 관리사무소·경비실·공동화장실·노인정 운동시설(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등에 대한 급수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시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 적용) ○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 ○ 그 밖의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태
욕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특수 및 목욕장업 ○ 법령(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시설기준(연면적 830㎡이하,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하)을 초과하거나 시설 기준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
산업용	<p>○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p>

현 행

[별표 1]

업종별 요금(제29조 관련)

(단위:원)

구분 업종별	사 용 량(m ³)	m ³ 당 요금	비 고
가 정 용	· 1~20	<u>590원</u>	
	· 21~30	<u>1,060원</u>	
	· 31m ³ 이상	<u>1,530원</u>	
일 반 용	· 1~100	<u>1,350원</u>	육군훈련소는 일반용 1단계 적용
	· 101~300	<u>1,680원</u>	육군훈련소는 2016 년 1월 부터 일반용 2단계 적용
	· 301~1000	<u>2,050원</u>	육군훈련소는 2017 년 1월부터 일반용 3 단계 적용
	· 1001~2000	<u>2,390원</u>	육군훈련소는 2018 년 1월부터 일반용 4 단계 적용
	· 2001m ³ 이상	<u>2,700원</u>	육군훈련소는 2019 년 1월부터 일반용 5단계 적용
육 탕 용	· 1~1000	<u>1,070원</u>	
	· 1001~1500	<u>1,550원</u>	
	· 1501~2000	<u>1,890원</u>	
	· 2001m ³ 이상	<u>2,220원</u>	
〈신 설〉	〈신 설〉	〈신 설〉	

개 정 안

[별표 1]

업종별 요금(제29조 관련)

(단위:원)

구분 업종별	사 용 량(m ³)	m ³ 당 요금	비 고
가 정 용	· -----	-----	
	· -----	-----	
	· -----	-----	
일 반 용	· -----	-----	-----
	· -----	-----	-----
	· -----	-----	-----
	· -----	-----	-----
	· -----	-----	-----
육 탕 용	· -----	-----	
	· -----	-----	
	· -----	-----	
	· -----	-----	
산 업 용	· 1~100	<u>1,350원</u>	
	· 101m ³ 이상	<u>1,680원</u>	

[별표 3]

업종구분표(제30조제1항 관련)

업종별	구분내역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점 및 부동산 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시설 ○경로당, 노인회관, 탁아소, 육아시설, 양로원, 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영리 목적의 시설 제외) ○공동주택 단지내 관리사무소·경비실·공동화장실·노인정 운동시설(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등에 대한 급수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시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 적용)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 ○그 밖의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태
욕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특수 및 목욕장업 ○법령(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시설기준(연면적 830㎡이하,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하)을 초과하거나 시설 기준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
<신설>	<신설>

[별표 3]

업종구분표(제30조제1항 관련)

업종별	구분내역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 -----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욕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산업용	<p>○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p>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별표 1(업종별 요금)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업종별 요금 산업용 추가에 따른 세입비용

나. 추계결과

- 업종별 요금 산업용 추가 조정에 따른 세입

구 분	건수(개소)	사용량(톤)	사 용 료(원)	비 고
일반용	30	248,473	611,502,000	
산업용 신규 적용시			416,444,640	단계별 적용 1단계 1톤~100톤 1,350원 2단계 101톤 이상1,680원
차 액			△ 195,057,360	현실화율 82.57%⇒81.21% (△1.36% 감소)

- ※ - 관내 산업(농공)단지 상수도 사용업체 산업용 **사용량별** 적용
- 논산훈련소(2단계) 감안 현실화율 82.57%⇒84.68%(2.11% 증가)

3. 작성자

맑은물과장 홍민기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5.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7.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수 도 법」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 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9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2에 따른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효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 따른 업종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분명 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효율이 높은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의 급수·배수관에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